



의 안 번 호	제180호
회 의 연 월 일	2021. 11. 15. (제476회 정기회의)

심의
의결
사항

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(대통령령)

제 출 부 서	경 찰 청 (생활안전국)
제출연월일	2021. 11. 4.

생활질서계장, 생활질서과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제안이유

법률에서 경찰서장 등이 보관하고 있는 유실물 매각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, 대통령령에서는 매각의 공고를 해당 경찰서 게시판에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실물 매각공고 수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다양한 매각공고 수단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유실물 매각공고 수단을 다양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,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“게시판에서만”을 “게시판·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”로 개정 함(안 제7조제2항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게시판에만”을 “게시판 ·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매각) ① (생 략) ②매각공고는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<u>게시판에만</u> 할 수 있다.	제7조(매각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게시판 · 인터넷 홈</u> <u>페이지 및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</u> <u>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</u>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생활질서과	
연 락 처	02 - 3150 - 1354